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512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51250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2. 20 선고 2021가소54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최승현

피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이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변론 종결 2023. 11. 23.

판결 선고 2024. 4. 1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2. 20. 선고 2021가소544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08,630원, 원고 C에게 420,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2. 9.부터 2024. 4.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B이,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169,115원, 원고 B에게 8,602,762원, 원고 C에게 5,039,7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의 항소취지 변경에 따라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들과 피고 D은 F과 G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 F은 1978. 2.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F은 2014. 11. 10.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중 각 2/11 지분, G은 3/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C은 2018. 10.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자신의 지분 2/11를 원고 A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A은 2018. 10. 16.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G은 2021. 4. 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D이 이 사건 주택 중 G 지분을 상속한 결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 A은 19/44 지분을, 원고 B은 11/44 지분을, 원고 C은 3/44 지분을, 피고 D은 11/4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 F은 사망하기 전에 H(I, 을 제2호증)에게 이 사건 주택 중 1층 40.33㎡ 및 12,95㎡를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F이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 H(I)으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하고 있다.

○ 피고들은, 피고 E의 명의로 J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층 33.05㎡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5. 3. 18.부터 2017. 3.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J으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1)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면, 그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무단 임대행위는 다른 지분 소유자의 공유지분의 사용·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다른 지분 소유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지분 소유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이 사건에서 상속인은 피고 D이고 피고 E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고 E을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이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1층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하고 있고, 2015. 3. 18.경부터는 피고 E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의 2층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피고들이 차임을 수령하고 있어, 피고 E 역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 범위

1) F이 사망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1. 14.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9. 27.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 1층의 차임으로 수령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14. 11. 14.부터 2021. 4. 1.까지(76개월 19일) 계산한 차임 22,990,000원[= 22,800,000원(= 76월 × 300,000원) + 190,000원(= 19일 × 10,000원, 이하 계산의 편의를 위해 1월에 미달하는 기간의 차임은 1일 10,000원으로 계산한다.)]에서 위 기간 중 이 사건 주택 1층 수리비로 사용되어 피고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832,000원(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19호증의 각 기재)을 공제한 22,158,000원(= 22,990,000원 - 832,000원)

○ G이 사망한 2021. 4. 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9. 27.까지(5개월 26일) 1,760,000원[= 1,500,000원(= 5월 × 300,000원) + 260,000원(= 26일 × 10,000원)]

2) 2015. 3. 18.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9. 27.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 2층의 차임으로 수령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 2015. 3. 18.부터 2021. 4. 1.까지(72개월 15일) 계산한 차임 21,750,000원[= 21,600,000원(= 72월 × 300,000원) + 150,000원(= 15일 × 10,000원)] 중 14,730,000원(인정근거 : 갑 제5호증,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 G이 사망한 2021. 4. 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9. 27.까지(5개월 26일) 1,760,000원[= 1,500,000원(= 5월 × 300,000원) + 260,000원(= 26일 × 10,000원)]

3) 위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차임 수령액을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 10,871,590원(= 4,062,200원 + 5,289,390원 + 1,520,000원)

■ 2014. 11. 14.부터 2018. 10. 15.까지; 1층 2,474,960원(= 13,612,290원1) × 2/11,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층 1,587,240원(= 8,729,870원2) × 2/11) = 4,062,200원

■ 2018. 10. 16.(원고 C으로부터 2/11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2021. 4. 1.까지; 1층 3,107,530원(= 8,545,710원3) × 4/11) + 2층 2,181,860원(= 6,000,130원4) × 4/11) = 5,289,390원

■ 2021. 4. 2.부터 2021. 9. 27.까지; 1층 760,000원 (= 1,760,000원 × 19/44) + 2층 760,000원(= 1,760,000원 × 19/44) = 1,520,000원

○ 원고 B: 7,586,900원(= 6,706,900원 + 880,000원)

■ 2014. 11. 14.부터 2021. 4. 1.까지 : 1층 4,028,720원(= 22,158,000원 × 2/11) + 2층 2,678,180원(= 14,730,000원 × 2/11) = 6,706,900원

■ 2021. 4. 2.부터 2021. 9. 27.까지 : 1층 440,000원 (= 1,760,000원 × 11/44) + 2층 440,000원(= 1,760,000원 × 11/44) = 880,000원

○ 원고 C: 4,302,200원(= 4,062,200원 + 240,000원)

■ 2014. 11. 14.부터 증여일인 2018. 10. 15.까지 ; 1층 2,474,960원(= 13,612,290원5) × 2/11,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층 1,587,240원(= 8,729,870원6) × 2/11) = 4,062,200원

■ 2021. 4. 2.부터 2021. 9. 27.까지 ; 1층 120,000원 (= 1,760,000원 × 3/44) + 120,000원(= 1,760,000원 × 3/44) = 240,000원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871,590원, 원고 B에게 7,586,900원, 원고 C에게 4,302,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에 대한 대여금 13,000,000원 상계(적극)

1) 피고들은, 피고 D이 원고 B에게 2007. 1. 12. 3,000,000원, 2009. 9. 3. 5,000,000원, 2013.

6. 28.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D은 원고 B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7차전887호로 위 1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1. '원고 B은 피고 D에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5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1.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어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이행기이므로 원고 B과 피고 D의 양 채권은 피고 D에 대한 소장 송달일인 2021. 12. 14.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들의 2023. 6. 5. 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가 2023. 6. 7. 원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원고 B의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1. 12. 14.에 소급하여 피고 D의 위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

나. 원고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납 구상금 3,118,400원 상계(적극)

1) 피고들은, 피고 D이 2012년경 원고 C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3,193,29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피고들의 부당이득금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평택세무서장이 2012. 11. 9. 원고 C에게 체납 양도소득세 3,118,400원을 2012. 11. 3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한 사실, 피고 D이 2012. 11. 28. 위 양도소득세 3,118,4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 D의 양도소득세 대납분 구상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행청구의 의사 및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2. 2. 3. 자 답변서가 원고 C에게 송달된 2022. 2. 8. 원고 C과 피고 D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이로써 원고 C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22. 2. 8. 소급하여 피고 D의 위 구상금 채권 3,118,4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위 양도소득세는 피고 D이 원고 C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므로 이에 대한 부담의무는 피고 D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공제(적극)

1) 피고들은, F의 사망 후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취득세 등으로 2,615,480원을 피고들이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중 원고들의 부담부분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위법 제24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등 징수금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민법 제425조가 준용되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법 제7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5항).

3)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2,615,480원 중 재산세 미납분 229,680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에서 각 지분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4. 11. 1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과 피고 D은 이 사건 주택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G은 이 사건 주택 중 3/1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D은 2015. 5. 14. 평택시 K대 36m²에 관한 취득세 등 1,194,480원,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취득세 등 1,191,320원 합계 2,385,800원을 납부한 사실, G은 2021. 4. 2.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D은 G의 권리, 의무를 각 1/4 비율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이 F 사망 후 상속과 관련하여 부담한 취득세 등 2,615,480원(= 229,680원 + 2,385,800원)에서 피고 D이 부담해야할 상속지분 1/4 상당액 653,870원(= 2,615,480원 × 1/4)을 제외한 나머지 1,961,610원(= 2,615,480원 - 653,870원)은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에서 각 지분 비율(각 653,870원)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이 취득세 등으로 납부한 위 2,385,800원은 G이 수령하는 유족연금이

입금되는 피고 D의 은행계좌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2,385,800원은 G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G이 2,385,800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보일러 설치비 공제(적극)

피고들이 2014. 12. 15. 이 사건 주택 2층의 보일러설치비로 6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을 제3호증),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A, C의 지분은 각 2/1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A, C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각 109,090원(= 600,000원 × 2/11)이 공제되어야 한다.

마. 부양료 공제(소극)

1) 피고들은, 자신들이 2014. 9.경부터 2021. 4.경까지 G의 치료비 등으로 76,265,840원을 부담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부양의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구상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부양의무자가 다른 동순위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가정법원이 당해 부양료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크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취지 참조).

3)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G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부양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 부양료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부양료 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 A, C에 대한 1998년경의 대여금 상계(소극)

1) 피고들은, 피고 D이 1998년경 원고 C에게 변호사비용으로 5,000,000원을, 원고 A, C에게 12,5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 상당액은 피고들의 부당이득금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원고 C에 대한 2007. 8. 29. 자 대여금 20,000,000원 상계(소극)

1) 피고들은, 피고 D이 2007. 8. 29. 원고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상당액은 피고들의 원고 C, A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5호증(채권자는 피고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는 G에게 하기로 되어 있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08,630원(= 10,871,590원 - 653,870원 - 109,090원), 원고 C에게 420,840원(= 4,302,200원 - 653,870원 - 109,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다.

4. 결론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C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 A, C의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영훈

판사오연수

판사김태흥

별지

- 1) 피고들이 2014. 11. 14.부터 2021. 4. 1.까지 수령한 22,158,000원을 일할 계산한 금액 13,612,290원(= 22,158,000원 × 1432/2331, 10원 미만 버림).
- 2) 피고들이 2015. 3. 18.부터 2021. 4. 1.까지 수령한 14,730,000원을 일할 계산한 금액 8,729,870원(= 14,730,000원 × 1308/2207, 10원 미만 버림).
- 3) 22,158,000원 - 13,612,290원
- 4) 14,730,000원 - 8,729,870원
- 5) 각주 1과 같다.
- 6) 각주 2와 같다.